

바이오안전성에 관한 카르타헤나 의정서의 책임 및 구제에 관한 나고야-쿠알라룸푸르 추가의정서

이 추가의정서의 당사국들은,

생물다양성협약의 바이오안전성에 관한 카르타헤나 의정서(이하 “의정서”)의 당사국들로서,

환경과 개발에 관한 리우선언 원칙 제13을 고려하고,

환경과 개발에 관한 리우선언 원칙 제15에 포함된 사전주의 접근방식을 재확인하면서,

의정서와 일치하는 한, 피해가 있는 경우 또는 피해가능성이 충분한 경우에 그에 따른 적절한 대응조치를 취해야 할 필요성을 인정하고,

의정서 제27조를 환기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목적

이 추가의정서는 유전자변형생물체와 관련된 책임과 구제 분야에 있어 국제 규칙 및 절차를 제공함으로써, 인체 건강에 대한 위험을 고려함과 동시에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사용

1. 생물다양성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 제2조와 의정서 제3조에서 사용된 용어는 이 추가의정서에도 적용된다.

2. 덧붙여, 추가의정서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a) “의정서 당사국회의 역할을 수행하는 당사국총회”란 의정서 당사국회의 역할을 수행하는 협약 당사국총회를 말한다.
- (b) “피해”란 인체 건강에 대한 위해를 고려함과 동시에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에 미치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부정적인 영향을 말한다.
 - (i) 인간이 초래한 변이와 자연적인 변이까지 모두 고려하여 책임기관에서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인정한 기준이 있다면, 이러한 기준을 감안해서 측정 가능하거나 달리 관찰 가능한 부정적 영향
 - (ii) 아래 제3항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중대한 부정적 영향
- (c) “사업자”란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통제하는 자로서 국내법에 따라 적절하게 정해진 자를 말하는데, 그 중에는 특히 면허 소유자, 해당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시장에 출시한 자, 개발자, 생산자, 통고자, 수출자, 수입자, 운반자 또는 공급자를 포함할 수 있다.
- (d) “대응조치”란 다음 각 목과 같은 합리적인 행위를 말한다.
 - (i) 적절하게 피해를 방지, 최소화, 봉쇄, 완화하거나 달리 회피하는 것
 - (ii) 다음 우선순위에 따라 취해지는 행위를 통해 생물다양성을 복원하는 것
 - a. 피해가 발생하기 이전에 존재했던 조건으로, 그렇지 못할 경우 가장 근접하게 동등한 조건으로 생물다양성을 복원한다. 하지만 그와 같은 복원이 가능하지 않다고 책임기관이 결정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복원한다.
 - b. 생물다양성의 손실을 그와 다른 생물다양성 구성요소로서 대체함에 있어 이전과 같은 위치에 존재하면서 같은 이용 유형을 갖는 것으로, 그렇지 않으면 적절한 경우 대안적 위치에 존재하거나 다른 이용 유형을 갖는 것으로 복원한다.

3. “중대한” 부정적 영향이란 다음 각 호와 같은 요소를 근거로 결정되어야 한다.

- (a) 합리적인 기간 이내에 자연적 회복 과정을 통해서 복구될 수 없는 변화라고 이해될 수 있는 장기적 또는 영구적 변화
- (b) 생물다양성 구성요소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질적 또는 양적 변화의 정도
- (c)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생물다양성 구성요소의 능력 감소
- (d) 의정서 맥락에 따른 인체 건강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의 정도

제3조 적용범위

1. 이 추가의정서는 국가간 이동으로부터 유래한 유전자변형생물체로부터 발생하는 피해에 적용하며, 여기에서 말하는 유전자변형생물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 (a) 식품 또는 사료로 직접 이용하거나 가공을 목적으로 하는 유전자변형생물체
- (b) 밀폐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유전자변형생물체
- (c) 의도적으로 환경에 방출하는 유전자변형생물체

2. 의도적인 국가간 이동에 적용할 경우, 이 추가의정서는 제1항에서 명시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승인받은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피해에 적용한다.

3. 이 추가의정서는 의정서 제17조에서 명시한 비의도적인 국가간 이동에서 발생하는 피해와 의정서 제25조에서 명시한 불법적인 국가간 이동에서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4. 이 추가의정서는 관할구역 안으로 국가간 이동이 이루어진 당사국에 대해 추가의정서가 발효된 이후에 국가간 이동이 시작된 유전자 변형생물체로부터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 적용한다.
5. 이 추가의정서는 당사국 국가 관할권 경계 내에 소재한 영역에서 발생한 피해에 적용한다.
6. 당사국들은 자국 관할권 경계 내에서 발생한 피해를 대응함에 있어 자국 국내법으로 설정한 기준을 이용할 수 있다.
7. 이 추가의정서를 이행하는 국내법은 비당사국에서 국가간 이동이 이루어진 유전자변형생물체로부터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 인과관계

해당 유전자변형생물체와 피해 간의 인과관계는 국내법에 따라 확정된다.

제5조 대응조치

1. 당사국은 피해가 발생하면 책임기관의 요건에 맞추어 해당하는 사업자(들)에게 다음 각 호를 요구한다.
 - (a) 지체 없이 책임기관에 통보함
 - (b) 피해를 평가함
 - (c) 적절한 대응조치를 취함
2. 책임기관은 다음 각 호를 조치한다.
 - (a) 피해를 발생시킨 사업자를 식별함
 - (b) 피해를 평가함
 - (c) 사업자가 취해야 할 대응조치를 결정함

3. 이용가능한 과학적 정보 또는 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를 통해 구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한 적절한 정보를 통해 판단했을 때, 때맞춘 대응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면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충분한 경우에 해당 사업자는 그러한 피해를 회피하기 위한 적절한 대응조치를 취하도록 요구된다.
4. 책임기관은, 특히 해당 사업자가 적절한 대응조치를 취하지 못한 경우를 포함하여, 적절한 대응조치를 취할 수 있다.
5. 책임기관은 피해의 평가와 모든 적절한 대응조치에서 발생하거나 그에 따라 수반되는 비용과 지출을 해당 사업자로부터 상환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당사국들은 해당 사업자가 비용과 지출을 부담하도록 요구되지 아니하는 예외적 상황을 자국 국내법에 규정할 수 있다.
6. 해당 사업자로 하여금 대응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는 책임기관의 결정은 합리적이어야 한다. 그러한 결정은 해당 사업자에게 통보되어야 한다. 그러한 결정에 대한 행정적·사법적 재검토 기회를 포함한 구제수단을 국내법에 규정한다. 또한 책임기관은 해당 사업자가 이용 가능한 구제수단에 관한 정보를 국내법에 따라 제공한다. 국내법에서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그러한 구제수단의 이용으로 인해 책임기관이 적절한 상황에서 대응조치를 취하는 것이 침해받지는 아니한다.
7. 제5조를 이행함에 있어, 그리고 책임기관이 취하는 또는 요구하는 특정한 대응조치를 정의함에 있어, 당사국들은, 그것이 적절한 경우, 민사책임에 관한 자국 국내법에 대응조치가 이미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를 평가할 수 있다.
8. 대응조치는 국내법에 따라 이행된다.

제6조 면제

1. 당사국들은 자국의 국내법에 다음 각 호의 면제 사유를 규정할 수 있다.
 - (a) 자연재해 또는 불가항력
 - (b) 전쟁행위 또는 내란
2. 당사국들은 적절하다고 간주한다면 제1항과 다른 면제 사유 또는 경감 사유를 자국의 국내법에 규정할 수 있다.

제7조 시효

당사국들은 다음 각 호를 자국 국내법에 규정할 수 있다.

- (a) 대응조치에 관련된 행위들에 관한 시효를 포함한 상대적 시효와 (또는) 절대적 시효
- (b) 시효가 적용되는 기간이 시작하는 때

제8조 재정적 한계

당사국들은 대응조치에 관련된 비용과 지출의 상황에 대한 재정적 한계를 자국 국내법에 규정할 수 있다.

제9조 구상권

이 추가의정서는 사업자가 제3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구상권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제10조 재정보증

1. 당사국들은 재정보증에 관해 자국 국내법에 규정할 권리를 보유한다.

2. 당사국들은 의정서 전문 마지막 세 문단을 고려하면서, 국제법상의 권리 및 의무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제1항의 권리를 행사한다.

3. 추가의정서가 발효된 이후 최초로 개최되는 의정서 당사국회의 역할을 수행하는 당사국총회에서는 특히, 다음 각 호를 다루는 포괄적인 연구를 수행하도록 사무국에 요청한다.

(a) 재정보증체계의 구체적 방식

(b) (a)와 같은 재정보증체계의, 특히 개발도상국에 대한, 환경적·경제적·사회적 영향에 관한 평가

(c) 재정보증을 제공할 수 있는 적절한 실체의 확인

제11조 국제불법행위에 대한 국가책임

이 추가의정서는 국제불법행위의 국가책임에 관한 일반국제법규칙에 따른 국가의 권리 및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2조 이행 및 민사책임 관계

1. 당사국들은 피해를 다루는 규칙과 절차를 자국 국내법에 마련한다. 이와 같은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당사국들은 추가의정서에 따른 대응조치를 규정하는데, 적절한 경우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를 수행할 수 있다.

(a) 적용 가능할 경우 민사책임에 관한 일반 규칙과 절차를 포함한 자국의 기존 국내법의 적용

(b) 이와 같은 목적을 특정하고 있는 민사책임 규칙과 절차의 적용 또는 개발

(c) (a)와 (b) 조합의 적용 또는 개발

2. 당사국들은 추가의정서 제2조제2항제(b)호에서 정의하고 있는 피해와 연관된 물적 또는 인적 피해에 관한 민사 책임을 다루는 적절한 규칙과 절차를 자국 국내법에 규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를 수행한다.

- (a) 민사책임에 관한 자국 기존 일반법의 지속적인 적용
- (b) 이와 같은 목적을 특정하고 있는 민사책임법의 개발과 적용 또는 지속적인 적용
- (c) (a)와 (b) 조합의 개발과 적용, 또는 지속적인 적용

3. 제1항 또는 제2항 중 제(b)호 또는 제(c)호에서 명시한 민사책임법을 개발하는 경우, 당사국들은 특히 다음 각 호를 적절하게 고려한다.

- (a) 피해
- (b) 엄격책임 또는 과실책임을 포함하는 책임의 기준
- (c) 적절한 경우, 책임의 집중
- (d) 제소권

제13조 평가 및 재검토

의정서 당사국회의의 역할을 수행하는 당사국총회는 추가의정서가 발효된 지 5년 후, 그리고 그 후 매 5년마다 추가의정서의 효과성에 대해 재검토한다(단, 그러한 재검토에 필요한 정보를 당사국들이 제공하여야 한다). 추가의정서 당사국들에 의해 달리 결정되지 아니하는 한, 재검토는 의정서 제35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의정서의 평가 및 재검토와 같은 맥락에서 수행된다. 최초의 재검토는 제10조와 제12조의 효과성에 대한 재검토를 포함한다.

제14조 의정서 당사국회의 역할을 수행하는 당사국총회

1. 협약 제32조제2항에 따라 의정서 당사국회의 역할을 수행하는 당사국총회는 추가의정서 당사국회의 역할을 수행한다.

2. 의정서 당사국회의 역할을 수행하는 당사국총회는 추가의정서의 이행을 정기적으로 재검토하고 그 위임된 권한 내에서 추가의정서의 효과적인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결정을 내린다. 이러한 당사국총회는 추가의정서에 의해 부여된 기능을 수행하고, 의정서 제29조제4항제(a)호부터 제(f)호까지에서 당사국총회에 부여한 기능도 준용하여 수행한다.

제15조 사무국

협약 제24조에 의해 설립된 사무국이 이 추가의정서 사무국의 역할을 수행한다.

제16조 협약 및 의정서와의 관계

1. 이 추가의정서는 의정서를 보충하지만, 의정서를 수정하거나 개정하지는 아니한다.
2. 이 추가의정서는 추가의정서 당사국들이 협약 및 의정서에서 가지는 권리 및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3. 이 추가의정서에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협약 및 의정서의 규정은 이 추가의정서에 준용한다.
4. 제3항을 손상하지 않으면서, 이 추가의정서는 국제법상에서 가지는 당사국의 권리 및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7조 서명

이 추가의정서는 2011년 3월 7일부터 2012년 3월 6일까지 뉴욕에 있는 국제연합 본부에서 의정서 당사국들의 서명을 위하여 개방한다.

제18조 발효

1. 이 추가의정서는 의정서 당사국인 국가 또는 지역경제통합기구의 40번째 비준서, 수락서, 승인서 또는 가입서가 기탁된 날로부터 90일째 되는 날에 발효한다.
2. 제1항에 명시한 바와 같은 40번째 문서가 기탁된 날 이후에 추가의정서를 비준, 수락, 승인 또는 가입하는 국가 또는 지역경제통합기구에 대해서는 해당하는 국가 또는 지역경제통합기구의 비준서, 수락서, 승인서 또는 가입서가 기탁된 날로부터 90일째 되는 날과 해당 국가나 지역경제통합기구에 대하여 의정서가 효력을 발생하는 날 중 늦은 날짜에 이 추가의정서는 발효한다.
3.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 지역경제통합기구가 기탁한 문서는 그러한 기구의 회원국들이 기탁한 문서에 추가되어 계산되지 아니한다.

제19조 유보

이 추가의정서에 대해서는 어떠한 유보도 할 수 없다.

제20조 탈퇴

1. 이 추가의정서가 당사국에 대하여 발효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난 후에는 언제든지, 그 당사국은 수탁자에게 서면통지를 함으로써 추가의정서로부터 탈퇴할 수 있다.
2. 이러한 탈퇴는 수탁자의 탈퇴통지 접수일로부터 1년의 기한이 만료되는 날 또는 탈퇴통지서에 그보다 더 늦은 날짜가 명시되는 경우에는 그 늦은 날짜에 효력을 발생한다.

3. 의정서 제39조에 따라 의정서로부터 탈퇴하는 당사국은 이 추가 의정서로부터도 탈퇴한 것으로 간주된다.

제21조 정본

아랍어 · 중국어 · 영어 · 불어 · 러시아어 및 스페인어본이 동등하게 정본인 이 추가의정서의 원본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된다.

이상의 증거로서,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추가의정서에 서명하였다.

2010년 10월 15일 나고야에서 작성되었다.